

(주)아모레퍼시픽그룹 ESG 위원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정관 39 조의 2 및 이사회 규정 제 11 조에 의한 ESG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권한)

위원회는 제 8 조의 내용과 같이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, 이사회 부의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및 기타 ESG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토의, 심의 및 의결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3 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ESG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고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
제 4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5 조 (종류)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.
- ② 정기회의는 매 반기별 1회씩 개최한다. 단, 필요 시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6 조 (소집권자 및 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간사는 회의일 전일까지 개최시기 및 장소를 위원 및 참석대상자에게 통보한다.
- ③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 7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8 조 (보고 또는 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 및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외부 규제 등 ESG 리스크에 대한 감독과 대응
- ② ESG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대응
- ③ ESG 전략 수립과 세부 실행 계획 사항
- ④ ESG 관련 이행 모니터링 및 개선 대응
- ⑤ 기타 ESG 관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제 9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의사록)

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이사회와의 관계)

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는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제 4 장 보 칙

제 12 조 (간 사)

위원회는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, 위원회 사무전반을 담당 처리한다.

제 13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에 의한다.

부 칙

- 1. 이 규정은 202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- 2. 이 규정은 2022.03.24.부터 시행한다.